

제2차 산업경제위원회
2007. 1. 23 (화) 14:00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
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설치 및
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1월 15 일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월 16 일

3. 제안 이유

- 농업부분의 자금 회전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 확대 및 최소한의 이자율 적용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“차세대농업인”, “귀농인” 용어정의 신설(제2조)
- 융자금 상환기간 확대
 - 시설자금 :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5년 균분상환
→ 5년거치 5년 균분상환(제8조)
- 융자금 이자율 인하 : 연2%→연1.5%(단,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 1%)(제8조)
-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신설(제9조)
- 기 지원된 융자금의 이율 감면 : 연2% →연1.5%(부칙 제2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1992년 12월 17일 제정·공포되어 시행된 조례로 금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농어업부분의 자금 회전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 확대 및 최소한의 이자율 적용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
- 다만, 안 제2조의 제5호 및 제6호의 신설에 따라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이 사업대상자를 신규로 포함되고, 안 제8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개정으로 시설자금의 상환기간이 최장 10년으로 확대 되어 향후 운용자금의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수입금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
- 또한, 부칙안 제2조의 단서조항 신설로 현재까지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율이 확정금리 2%로 적용하다가 1.5%로 감면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 및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의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관계법령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회계의 구분)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계리(計理)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